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674호 2025. 12. 18.(목)

선 람	기 관 의 장

고 시

○예천 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예천군 고시 제2025-158호)

공 고

○예천 군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공고(예천군 공고 제2025-1652호)

○예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예천군 공고 제2025-1697호)

회 람									
--------	--	--	--	--	--	--	--	--	--

발 행 예천군 편찬 홍보소통과(전화 650-6071)

예천 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예천군 예천읍 서본리 247번지 일원 ‘예천 서본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의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8일

예 천 군 수

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공간시설

1) 공원(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3	서본 공원	근린 공원	예천읍 서본리 247번지 일원	49,789	-	49,789	건고 제713호 (1967.12.26)	

나.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총괄표

시설 구분	기정					변경				
	부지 면적 (㎡)	시설 면적 (㎡)	건축물 (㎡)		구성비 (%)	부지 면적 (㎡)	시설 면적 (㎡)	건축물 (㎡)		구성비 (%)
			건축 면적	연면적				건축 면적	연면적	
합계	72,786	25,998	3,513.02	7,337.18	100.0	49,789 (감22,997)	8,551 (감17,447)	19.5 (감3,493.52)	19.5 (감7,297.68)	100.0
기반 시설	9,973	9,973	-	-	13.7	4,132 (감5,841)	4,132 (감5,841)	-	-	8.3
조경 시설	202	202	-	-	0.3	144 (감58)	144 (감58)	-	-	0.3
휴양 시설	3,077	3,077	675.32	1,716.89	4.2	794 (감2,283)	794 (감2,283)	- (감675.32)	- (감1,716.89)	1.6
유희 시설	1,200	1,200	-	-	1.6	185 (감1,015)	185 (감1,015)	-	0	0.4
운동 시설	663	663	-	-	0.9	84 (감579)	84 (감579)	-	-	0.2
교양 시설	7,618	7,618	2,738.5	5,517.09	10.5	1,650 (감5,968)	1,650 (감5,968)	- (감2,738.5)	- (감5,517.09)	3.3
편의 시설	3,265	3,265	992	103.2	4.5	1,562 (감1,703)	1,562 (감1,703)	19.5 (감79.7)	19.5 (감83.7)	3.1
녹지· 기타	46,788	-	-	-	64.3	41,238 (감5,550)	-	-	-	82.8
공원 시설률	◦ 25,810 ÷ 72,786 × 100 = 35.5%(법정 40%이하)					◦ 8,551 ÷ 49,789 × 100 = 17.2%(법정 40%이하)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공원시설의 설치면적 등)

〈별표4〉 도시공원 안 공원시설 부지면적에 따른 근린공원 공원시설률 40%이하 준수

2) 세부시설 결정(변경)조서

시설구분	시설명	부호	기정				변경					비고	
			부지면적 (㎡)	건 축 물 (㎡)			공작물	부지면적 (㎡)	건 축 물 (㎡)				공작물
				동수 (층)	건축 면적	연면적			동수 (층)	건축 면적	연면적		
합 계			72,786	-	3,513.02	7,337.18		49,789	-	19.5	19.5		
기 반 시 설	소 계		9,973	-	-	-		4,132	-	-	-		
	도 로	1-1	7,001	-	-	-		3,686	-	-	-		변경
	광 장		2,972	-	-	-		446	-	-	-		변경
	광장1	1-2	1,382	-	-	-		446	-	-	-		변경
	광장2	1-3	1,572	-	-	-		-	-	-	-		폐지
조 경 시 설	소 계		202	-	-	-		144	-	-	-		
	파고라1	2-1	202	-	-	-		-	-	-	-		폐지
	잔디마당	2-1	-	-	-	-		144	-	-	-		신설
	플랜터의자	①	-	-	-	-		-	-	-	-	6개소	신설
휴 양 시 설	소계		3,077	-	675.32	1,716.89		794	-	-	-		
	노인복지회관		2,703	-	631.32	1,672.89		-	-	-	-		폐지
	1	3-1		1 (지상2)	381.82	1,113.02		-	-	-	-		폐지
	2	3-2		1 (지상2)	249.50	559.87		-	-	-	-		폐지
	노인정	3-3	278	1 (지상1)	24	24		-	-	-	-		폐지
	휴게소	3-4	96	1 (지상1)	20	20		-	-	-	-		폐지
	휴게쉼터-1	3-1	-	-	-	-		398	-	-	-		신설
	휴게쉼터-2	3-2	-	-	-	-		85	-	-	-		신설
	휴게쉼터-3	3-3	-	-	-	-		79	-	-	-		신설
	휴게쉼터-4	3-4	-	-	-	-		82	-	-	-		신설
	휴게쉼터-5	3-5						92	-	-	-		신설
	휴게쉼터-6	3-6						58	-	-	-		신설
	등의자	②	-	-	-	-		-	-	-	-	10개소	신설
	앉음벽	③	-	-	-	-		-	-	-	-	27m	신설
	파고라의자셋트	④	-	-	-	-		-	-	-	-	4개소	신설
유 회 시 설	소 계		1,200	-	-	-		185	-	-	-		
	어린이놀이터	4-1	1,200	-	-	-		-	-	-	-		폐지
	그네		-	-	-	-		-	-	-	-		폐지
	미끄럼틀		-	-	-	-		-	-	-	-		폐지
	사장		-	-	-	-		-	-	-	-		폐지
	시소		-	-	-	-		-	-	-	-		폐지
	정글짐		-	-	-	-		-	-	-	-		폐지
	기타		-	-	-	-		-	-	-	-		폐지

시설구분	시설명	부호	기정					변경					비고
			부지면적 (㎡)	건축물 (㎡)			공작물	부지면적 (㎡)	건축물 (㎡)			공작물	
				동수 (층)	건축면적	연면적			동수 (층)	건축면적	연면적		
유회시설	숲놀이터	4-1	-	-	-	-		185	-	-	-		신설
	통나무건너기	⑤	-	-	-	-		-	-	-	-	1개소	신설
	숲속그네	⑥	-	-	-	-		-	-	-	-	1개소	신설
	네트망오르기	⑦	-	-	-	-		-	-	-	-	1개소	신설
	숲움막	⑧	-	-	-	-		-	-	-	-	1개소	신설
운동시설	소 계		663	-	-	-		84	-	-	-		폐지
	정구장		-	-	-	-		-	-	-	-		폐지
	배구장		-	-	-	-		-	-	-	-		폐지
	게이트볼장	5-1	663	-	-	-		-	-	-	-		폐지
	체력단련시설	5-1	-	-	-	-		84	-	-	-		신설
	체력단련시설-1	⑨	-	-	-	-		-	-	-	-	1개소	신설
	체력단련시설-2	⑩	-	-	-	-		-	-	-	-	1개소	신설
	체력단련시설-3	⑪	-	-	-	-		-	-	-	-	1개소	신설
	체력단련시설-4	⑫	-	-	-	-		-	-	-	-	1개소	신설
교양시설	소 계	⑬	7,618		2,738.5	5,517.09		1,650	-	-	-		
	문화회관	6-1	5,472	1 (지상3)	2,443.5	4,411.09		-	-	-	-		폐지
	학생도서관	6-2	2,146	1 (지상4)	295	1106		-	-	-	-		폐지
	충혼광장	6-1	-	-	-	-		1,650	-	-	-		신설
편익시설	소 계		3,265	-	99.2	103.2		1,562	-	-	-		
	주차장	7-1	2,537	-	-	-		1,523	-	-	-		변경
	공중화장실1	7-2	117	1 (지상1)	24	24		39	1 (지상1)	19.5	19.5		변경
	공중화장실2	7-3	146	1 (지상1)	24	24		-	-	-	-		폐지
	공중화장실3	7-4	29	1 (지상1)	7.2	7.2		-	-	-	-		폐지
	전망대	7-5	418	1 (지상2)	28	28		-	-	-	-		폐지
	시계탑	7-6	18	-	-	-		-	-	-	-		폐지
녹지	-		46,788					41,238					변경

3)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연장 (m)	면적 (㎡)	기능	시 점	종 점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합계	기정				2,000.5	7,001.0				
	변경				1,259	3,686				
폐지	소로	3	1	6	262	1,733	간선도로	부지경계	소3-간3	
폐지	소로	3	2	6	40	240	간선도로	소3-간1	부지경계	
폐지	소로	3	3	6	260	1560	간선도로	소3-산2	부지경계	
폐지	소로	3	1	4	180	720	지선도로	소3-간3	소3-산2	
폐지	소로	3	1	2	404	808	산책로	주차장	소3-간1	
폐지	소로	3	2	2	140	280	산책로	소3-간2	소3-지1	
폐지	소로	3	4	2	159	318	산책로	소3-산1	소3-간3	
폐지	소로	3	5	2	40	80	산책로	소4-간1	소3-산2	
폐지	소로	3	7	2	133.5	267	산책로	소3-간3	소3-산4	
폐지	소로	3	9	2	31	62	산책로	소3-간3	소3-산7	
폐지	소로	3	10	2	70	140	산책로	소3-간3	소3-지1	
폐지	소로	3	11	2	50	100	산책로	소3-간3	소3-지1	
폐지	소로	3	12	3	63	190	산책로	소3-간1	소3-간1	
폐지	소로	3	13	3	98	293	산책로	소3-간1	소3-간1	
폐지	소로	3	14	3	45	134	산책로	광장1	소3-산13	
폐지	소로	3	15	3	25	76	산책로	소3-산13	소3-산14	
신설	소로	2	1	9.0	43	2,114	진입로	부지경계	주차장	
신설	소로	3	1	3.5~8.0	54	315	진입로	부지경계	부지경계	
신설	소로	3	2	2.5	437	1,059	산책로	충혼광장	주차장	
신설	소로	3	3	2.5	2	11	산책로	소3-1	소3-9	
신설	소로	3	4	2.5	74	218	산책로	휴게쉼터5	소3-2	
신설	소로	3	5	2.5	36	162	진입로	부지경계	소3-8	
신설	소로	3	6	2	79	143	산책로	휴게쉼터3	소3-2	
신설	소로	3	7	2	76	194	진입로	부지경계	소3-2	
신설	소로	3	8	2.0~3.0	220	31	진입로	부지경계	광장	
신설	소로	3	9	2.0~2.5	112	197	산책로	소3-2	소3-1	
신설	소로	3	10	1.5~2.0	15	26	진입로	소2-1	부지경계	
신설	소로	3	11	2.0	48	97	산책로	소3-2	소3-9	
신설	소로	3	12	3.0	54	243	진입로	휴게쉼터5	부지경계	
신설	소로	3	13	1.5	9	14	진입로	주차장	부지경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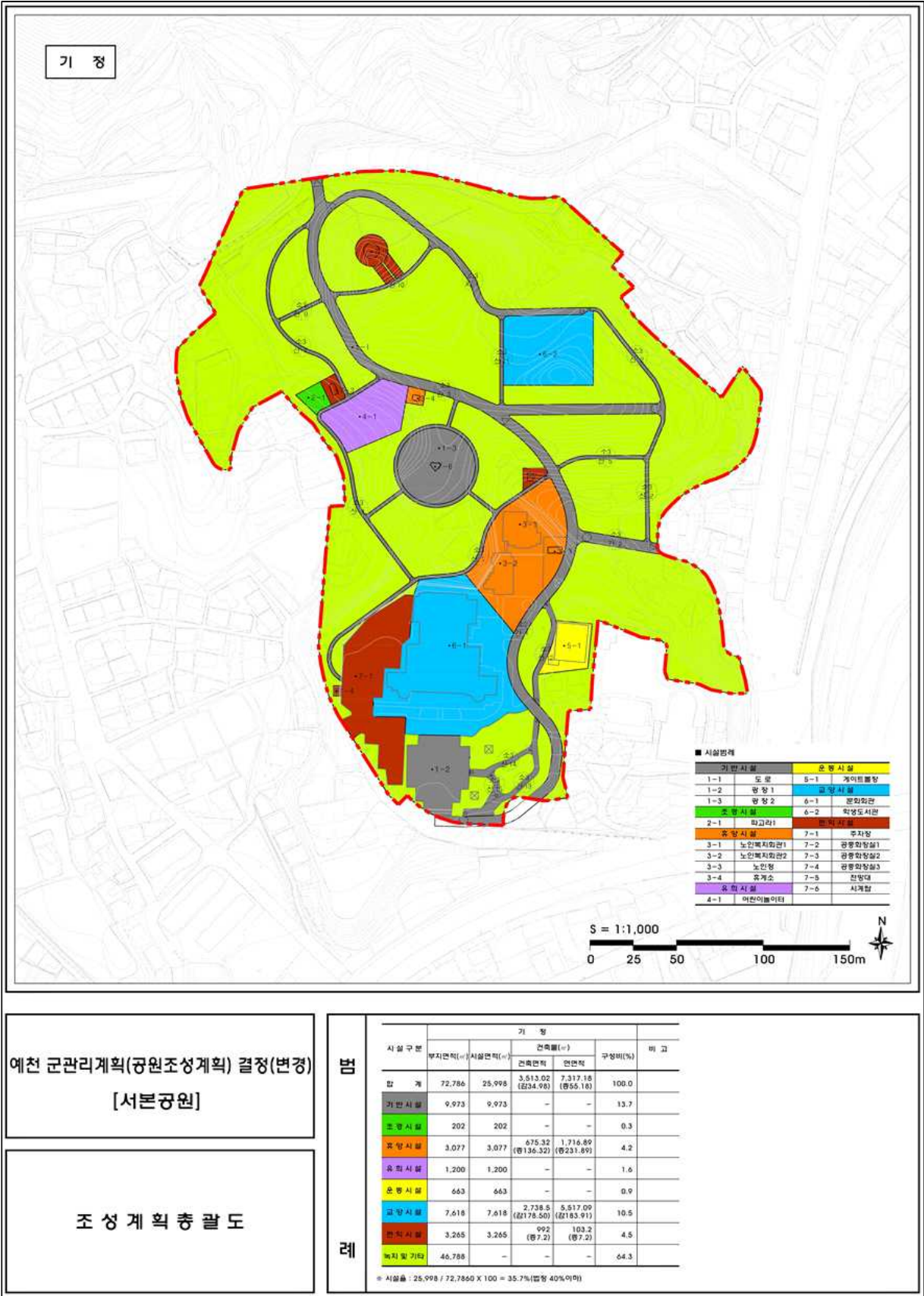
※ 위 도로는 군계획시설이 아닌 공원 내 도로용지 구분 표시임.

2. 군관리계획 결정 도서 및 지형도면 등 : 게재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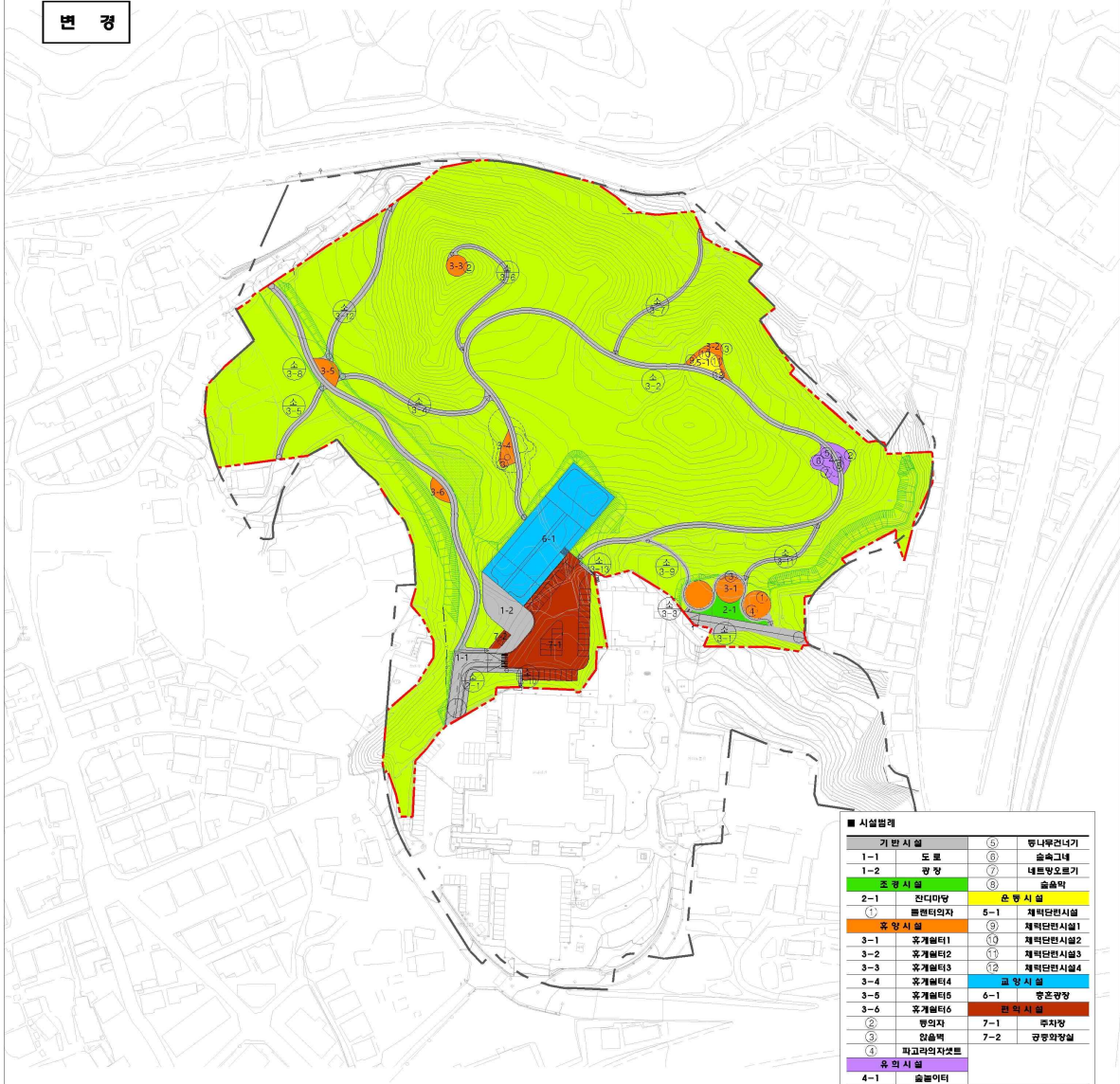
※ 아래 결정도는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외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함

3. 고시 관련 세부내용은 예천군청 도시과(☎054-650-6346)에서 열람 가능 합니다.

[참고]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도



변경



S = 1:1,000

0 25 50 100 150m



예천 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서본공원]

조성계획총괄도

범

례

시설구분	기정				구성비(%)	변경				구성비(%)	비고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면적	면적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면적	면적		
합계	72,786	25,998	3,513.02	7,317.18	100.0	49,789 (감22,997)	8,551 (감17,447)	19.5 (감3,493.52)	19.5 (감7,297.68)	100.0	
기반시설	9,973	9,973	-	-	13.7	4,132 (감5,841)	4,132 (감5,841)	-	-	8.3	
조경시설	202	202	-	-	0.3	144 (감58)	144 (감58)	-	-	0.3	
휴양시설	3,077	3,077	675.32	1,716.89	4.2	794 (감2,283)	794 (감2,283)	-	-	1.6	
유익시설	1,200	1,200	-	-	1.6	185 (감1,015)	185 (감1,015)	-	-	0.4	
순명시설	663	663	-	-	0.9	84 (감579)	84 (감579)	-	-	0.2	
교양시설	7,618	7,618	2,738.5	5,517.09	10.5	1,650 (감5,968)	1,650 (감5,968)	-	-	3.3	
편익시설	3,265	3,265	99.2	103.2	4.5	1,562 (감1,703)	1,562 (감1,703)	19.5 (감79.7)	19.5 (감83.7)	3.1	
복지 및 기타	46,788	-	-	-	64.3	41,238 (감5,550)	-	-	-	82.8	

* 시설률 : 8,551 ÷ 49,789 × 100 = 17.2% (법정 40% 이하)

예천 군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2026년 1월 1일자 예천군의 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집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8일

예 천 군 수

1. 단계별집행계획 총괄표

구 분			미집행시설 현황		미집행 사업비 (백만원)	단계별집행계획(㎡)												비고
						1단계						2-1(4)단계		2-1(5)단계		2-2단계		
			1년차 (2026년)			2년차 (2027년)		3년차 (2028년)		4년차 (2029년)		5년차 (2030년)		6년차이후 (2031년~)				
			개소 (개)	면적 (㎡)		개소 (개)	면적 (㎡)	개소 (개)	면적 (㎡)	개소 (개)	면적 (㎡)	개소 (개)	면적 (㎡)	개소 (개)	면적 (㎡)	개소 (개)	면적 (㎡)	
합 계			121	483,457	96,734	5	148,678	2	13,900	2	55,513	1	2,362	-	-	111	263,004	
교통 시설	계		66	81,439	30,285	2	2,009	2	13,900	1	2,485	-	-	-	-	61	63,045	
	도 로	소계	59	74,019	27,643	2	2,009	2	13,900	1	2,485	-	-	-	-	54	55,625	
		대로	-	-	-	-	-	-	-	-	-	-	-	-	-	-	-	
		중로	13	38,665	14,981	-	-	1	9,920	1	2,485	-	-	-	-	11	26,260	
		소로	46	35,354	12,662	2	2,009	1	3,980	-	-	-	-	-	-	43	29,365	
	주차장		7	7,420	2,642	-	-	-	-	-	-	-	-	-	-	7	7,420	
공간 시설	계		43	232,839	35,387	2	134,344	-	-	-	-	-	-	-	-	41	98,495	
	광 장		3	4,722	860	-	-	-	-	-	-	-	-	-	-	3	4,722	
	공 원		9	183,367	24,525	2	134,344	-	-	-	-	-	-	-	-	7	49,023	
	녹 지		31	44,750	10,003	-	-	-	-	-	-	-	-	-	-	31	44,750	
공공 문화 체육 시설 방재 시설	계		9	166,429	30,730	1	12,325	-	-	1	53,028	1	2,362	-	-	6	98,714	
	학 교		6	96,696	16,845	-	-	-	-	-	-	1	2,362	-	-	5	94,334	
	공공청사		2	16,705	5,976	1	12,325	-	-	-	-	-	-	-	-	1	4,380	
	체육시설		1	53,028	7,909	-	-	-	-	1	53,028	-	-	-	-	-	-	
	계		3	2,750	332	-	-	-	-	-	-	-	-	-	-	3	2,750	
유수지			3	2,750	332	-	-	-	-	-	-	-	-	-	-	3	2,750	

2. 단계별집행계획 세부조서 : 별첨1

3. 관계도서는 예천군청 도시과(☎054-650-6349)에서 열람가능 합니다.

[별첨1] 단계별집행계획 세부조서

■ 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조서

가. 도시지역

1) 예천도시지역

시설명	시설규모			미집행 면적 (㎡)	사업개요 (L=m, A=㎡)	소요 사업비 (천원)	단계 구분	비고
	폭원 (m)	연장 (m)	면적 (㎡)					
남산공원	-	-	69,370	69,370	(A=69,370)	9,223,523	1-1	
서본공원	-	-	64,974	64,974	(A=64,974)	7,422,072	1-1	
예천경찰서	-	-	12,325	12,325	(A=12,325)	4,338,880	1-1	
1년차 시설수 : 3개, 사업비:						20,984,475	천원	
중로1-13	20	487	9,920	9,920	(L=20, A=9,920)	4,958,160	1-2	
2년차 시설수 : 1개, 사업비:						4,958,160	천원	
대창중 고등학교	-	-	16,171	2,362	(A=2,362)	1,596,364	2-1(4)	
4년차 시설수 : 1개, 사업비:						1,596,364	천원	
중로3-12	12	164	1,794	1,794	(L=164, A=1,794)	1,977,464	2-2	
중로3-13	12	125	1,342	1,342	(L=125, A=1,342)	1,840,657	2-2	
소로1-35	10	120	1,078	1,078	(L=120, A=1,078)	1,546,251	2-2	
소로2-77	8	116	870	870	(L=116, A=870)	600,121	2-2	
소로2-78	8	105	780	780	(L=105, A=780)	1,090,245	2-2	
소로2-79	8	323	2,175	2,175	(L=323, A=2,175)	1,363,669	2-2	
소로3-16(특)	4	50	200	200	(L=50, A=200)	135,126	2-2	
주차장2	-	-	1,840	1,840	(A=1,840)	1,913,357	2-2	
대심제1 어린이공원	-	-	2,300	2,300	(A=2,300)	1,895,851	2-2	
완충녹지1	-	-	1,303	1,303	(A=1,303)	732,244	2-2	
완충녹지2	-	-	1,257	1,257	(A=1,257)	665,567	2-2	
완충녹지10	-	-	4,515	4,515	(A=4,515)	2,672,511	2-2	
6년차 이후 시설수 : 12개, 사업비:						16,433,063	천원	

2) 호명 도시지역

시설명	시설규모			미집행 면적 (㎡)	사업개요 (L=m, A=㎡)	소요 사업비 (천원)	단계 구분	비고
	폭원 (m)	연장 (m)	면적 (㎡)					
초등학교4	-	-	17,580	17,580	(A=17,580)	3,688,565	2-2	
초등학교5	-	-	18,831	18,831	(A=18,831)	1,709,216	2-2	
초등학교8	-	-	17,884	17,884	(A=17,884)	1,448,604	2-2	
중학교5	-	-	17,580	17,580	(A=17,580)	1,423,980	2-2	
고등학교2	-	-	22,459	22,459	(A=22,459)	6,978,454	2-2	
6년차 이후 시설수 : 5개, 사업비:						15,248,819	천원	

3) 용궁도시지역

시설명	시설규모			미집행 면적 (㎡)	사업개요 (L=m, A=㎡)	소요 사업비 (천원)	단계 구분	비고
	폭원 (m)	연장 (m)	면적 (㎡)					
소로1-4	10	397	3,980	3,980	(L=397, A=3,980)	734,723	1-2	
2년차 시설수 : 1개, 사업비:						734,723	천원	
읍부공원	-	-	12,355	12,355	(A=12,355)	1,417,375	2-2	
6년차 이후 시설수 : 1개, 사업비:						1,417,375	천원	

나. 비도시지역

1) 호명지구

시설명	시설규모			미집행 면적 (㎡)	사업개요 (L=m, A=㎡)	소요 사업비 (천원)	단계 구분	비고
	폭원 (m)	연장 (m)	면적 (㎡)					
소로2-호3	8	117	999	999	(L=117, A=999)	301,845	1-1	
1년차 시설수 : 1개, 사업비:						301,845 천원		
중로3-호3	12	204	2,485	2,485	(L=204, A=2,485)	849,630	1-3	
3년차 시설수 : 1개, 사업비:						849,630 천원		
중로2-호1	15	203	3000	3000	(L=200, A=3,000)	1,074,297	2-2	
중로2-호2	15	423	6474	2936	(L=423, A=2,936)	693,561	2-2	
중로2-호3	15	12	183	53	(L=12, A=53)	9,169	2-2	
중로3-호1	12	677	8090	2646	(L=677, A=2,646)	651,110	2-2	
중로3-호2	12	749	8945	3480	(L=295, A=3,480)	838,266	2-2	
소로1-호2	10	282	2854	2854	(L=282, A=2,854)	802,754	2-2	
소로2-호1	8	99	817	817	(L=99, A=817)	366,081	2-2	
소로2-호2	8	132	1067	1067	(L=132, A=1,067)	283,524	2-2	
소로2-호4	8	108	914	914	(L=108, A=914)	375,298	2-2	
소로2-호5	8	128	1023	1023	(L=128, A=1,023)	384,098	2-2	
소로2-호6	8	85	694	694	(L=85, A=694)	197,814	2-2	
소로2-호7	8	135	1,112	1,112	(L=135, A=1,112)	454,440	2-2	
소로3-호1	6	81	503	503	(L=81, A=503)	185,555	2-2	
소로3-호2	6	74	478	478	(L=74, A=478)	112,697	2-2	
소로3-호3	6	136	827	827	(L=136, A=827)	253,073	2-2	
소로3-호8	6	145	923	923	(L=145, A=923)	301,938	2-2	
소로3-호9	6	62	378	378	(L=62, A=378)	110,129	2-2	
소로3-호10	4	381	1,546	1,546	(L=381, A=1,546)	356,372	2-2	
소로3-호11	4	143	562	562	(L=143, A=562)	97,226	2-2	
소로3-호12	4	31	128	128	(L=31, A=128)	22,144	2-2	
주차장호1	-	-	560	560	(A=560)	93,571	2-2	
주차장호2	-	-	620	620	(A=620)	71,691	2-2	
주차장호3	-	-	860	860	(A=860)	144,513	2-2	

(계속)

시설명	시설규모			미집행 면적 (㎡)	사업개요 (L=m, A=㎡)	소요 사업비 (천원)	단계 구분	비고
	폭원 (m)	연장 (m)	면적 (㎡)					
광장호1	-	-	1,412	1,412	(A=1,412)	468,518	2-2	
광장호2	-	-	1,475	1,475	(A=1,475)	242,762	2-2	
광장호3	-	-	1,835	1,835	(A=1,835)	148,635	2-2	
호명근린공원	-	-	11,078	11,078	(A=11,078)	1,474,622	2-2	
호명1소공원	-	-	5,415	5,415	(A=5,415)	862,518	2-2	
호명2소공원	-	-	1,730	1,730	(A=1,730)	315,731	2-2	
호명3소공원	-	-	1,760	1,760	(A=1,760)	329,526	2-2	
완충녹지호1	-	-	2,974	2,974	(A=2,974)	733,049	2-2	
완충녹지호2	-	-	1,151	1,151	(A=1,151)	289,067	2-2	
경관녹지호1	-	-	1,892	1,892	(A=1,892)	219,677	2-2	
경관녹지호2	-	-	2,886	2,886	(A=2,886)	276,542	2-2	
경관녹지호3	-	-	3,179	3,179	(A=3,179)	443,054	2-2	
경관녹지호4	-	-	693	693	(A=693)	73,733	2-2	
경관녹지호5	-	-	98	98	(A=98)	8,526	2-2	
경관녹지호6	-	-	495	495	(A=495)	99,495	2-2	
경관녹지호7	-	-	422	422	(A=422)	65,806	2-2	
경관녹지호8	-	-	785	785	(A=785)	113,552	2-2	
공공청사호1	-	-	4,380	4,380	(A=4,380)	1,636,793	2-2	
6년차 이후 시설수 : 41개, 사업비:						15,680,927	천원	

2) 용문상금곡지구

시설명	시설규모			미집행 면적 (㎡)	사업개요 (L=m, A=㎡)	소요 사업비 (천원)	단계 구분	비고
	폭원 (m)	연장 (m)	면적 (㎡)					
소로3-32	6	170	1,010	1,010	(L=170, A=1,010)	473,076	1-1	
1년차 시설수 : 1개, 사업비:						473,076	천원	

3) 예천온천지구

시설명	시설규모			미집행 면적 (㎡)	사업개요 (L=m, A=㎡)	소요 사업비 (천원)	단계 구분	비고
	폭원 (m)	연장 (m)	면적 (㎡)					
중로3-1	12	34	423	423	(L=34, A=423)	84,990	2-2	
중로3-2	12	202	2,420	2,420	(L=202, A=2,420)	469,962	2-2	
중로3-3	12	463	5,389	5,389	(L=463, A=5,389)	1,019,502	2-2	
중로3-4	12	222	2,700	2,700	(L=222, A=2,700)	514,096	2-2	
소로1-1	10	111	1,136	1,136	(L=111, A=1,136)	231,965	2-2	
소로1-2	10	46	454	454	(L=46, A=454)	86,077	2-2	
소로2-1	8	60	655	655	(L=60, A=655)	133,212	2-2	
소로2-2	8	80	682	682	(L=80, A=682)	141,207	2-2	
소로3-1	6	50	295	295	(L=50, A=295)	61,567	2-2	
소로3-2	6	36	231	231	(L=36, A=231)	48,210	2-2	
소로3-3	6	58	437	437	(L=58, A=437)	85,692	2-2	
소로3-4	6	26	162	162	(L=26, A=162)	29,146	2-2	
소로3-5	6	350	2,072	2,072	(L=350, A=2,072)	365,928	2-2	
소로3-6(특)	4	88	349	349	(L=88, A=349)	67,900	2-2	
소로3-7(특)	4	70	278	278	(L=70, A=278)	49,072	2-2	
소로3-8(특)	4	70	253	253	(L=70, A=253)	50,651	2-2	
소로3-9	4	37	203	203	(L=37, A=203)	37,317	2-2	
소로3-10	4	72	277	277	(L=72, A=277)	52,296	2-2	
소로3-11	4	42	167	167	(L=42, A=167)	34,552	2-2	
소로3-12	4	27	113	113	(L=27, A=113)	123,530	2-2	
소로3-13(특)	2	224	457	457	(L=224, A=457)	82,306	2-2	
소로3-14	2	19	47	47	(L=19, A=47)	8,311	2-2	
소로3-15(특)	2	251	487	487	(L=251, A=487)	126,883	2-2	
소로3-16(특)	2	65	129	129	(L=65, A=129)	22,774	2-2	
소로3-17(특)	2	514	1,002	1,002	(L=514, A=1,002)	176,822	2-2	
소로3-18(특)	2	30	61	61	(L=30, A=61)	10,776	2-2	
소로3-19(특)	2	243	489	489	(L=243, A=489)	87,419	2-2	

(계속)

[illegible]

5) 지보면 비도시지역

시설명	시설규모			미집행 면적 (㎡)	사업개요 (L=m, A=㎡)	소요 사업비 (천원)	단계 구분	비고
	폭원 (m)	연장 (m)	면적 (㎡)					
문화공원1	-	-	19,100	14,385	(A=14,385)	1,583,794	2-2	
6년차 이후 시설수 : 1개, 사업비: 1,583,794 천원								

예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8일

예 천 군



1. 조례명 : 예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지역사회 차원의 보장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심의·자문을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의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2조)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장의 심의 및 자문기구

- 전문위원회 : 대표협의체의 효율적 심의·자문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
- 실무협의체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

- 실무분과 :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
-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읍면동 단위 사회보장 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발굴·연계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

나. 협의체 기구 및 전문위원회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4조, 제6조)

- 대표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협의체, 운영위원회 및 사무국을 둔다.

다. 협의체 구성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5조~제9조)

4. 개정조례안 : 별첨

5.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사회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방문 제출

1) 전자우편(이메일) : red5ruby@korea.kr

2) 주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사회복지과

3) 팩스 : 054-650-620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사회복지과(전화: 054-650-620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
(www.ycg.kr) 『열린군정-군정소식-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예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예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예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예천군수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전문위원회”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심의·자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3.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4.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5. “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읍·면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민관협력을 바탕으로 복지서

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한 조직을 말한다.

제3조(기능) 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자문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 법인 이사의 추천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협의체 기구) 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표 협의체, 전문위원회,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 협의체(이하 “읍·면협의체”라 한다), 운영위원회 및 사무국을 둔다.

제5조(대표협의체) ① 대표협의체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군수·사회복지과장·보건소장·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 위원장으로 선출하되, 공무원인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제6조(전문위원회) 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7항에 따라 협의체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민간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문화복지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보건소장, 사회복지과장, 주민행복과장 및 예천군수가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공무원
2.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문경예천지사장, 국민연금관리공단 문경지사장, 예천군사회복지협회장, 예천군사회복지사협회장, 예천군건축사협회장, 예천군의사회회장, 예천군약사회회장, 예천군한의사회회장 및 지역사회보건복지 분야에 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운영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건복지 증진 등에 직접 기여한 공무원 또는 지역사회보건복지와 관계되

는 공무원 등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자문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이 된다.

⑥ 위원회에서 심의안건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 대표협의체 안건으로 상정하여 처리한다.

⑦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 의결을 거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이하 “실무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희망복지지원담당과 보건행정담당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자원개발 분과를 둘 수 있다.

제8조(실무분과)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

보건의료 등 업무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9조(읍·면 협의체) ① 읍·면 지역의 사회보장대상자 발굴 및 자원 연계를 위해 읍·면협의체를 두며, 읍·면협의체 위원은 읍·면별 10명 이상으로 하되 위원장은 읍·면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사람이 공동으로 담당한다.

② 읍·면협의체의 위원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면장의 추천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민간위원장, 주무과장, 민간부위원장, 실무위원장, 분과위원장 4명, 국장 등 9명으로 구성·운영한다.

제11조(위원명단 공개)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제5조제2항, 제3항 및 제6조제1항에 의한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을 군보와 예천군 누리집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의 경우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해촉할 수 있다.

제15조(간사)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명의 간사를 둔다.

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16조(사무국) ① 각 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상근의 유급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41조제2항에 관한 사항
2. 행정실무 및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제17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군수 또는 각 협의체 재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 및 의결사항
 4. 심의 및 의결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9조(의결사항의 처리) 군수는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1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22조(회의수당) 각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관계인 등에게는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협의체 운영지원) 군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국유·공유 재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